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법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법 제2조제1호사목의 화폐를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 내에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가목 전단의 예금등
4.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의 확인을 위하여 수수하는 것 등과 같이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간에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 등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융위원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다)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

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판사·검사·변호사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가상자산 관련 기관·단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5조(예치금의 예치 또는 신탁)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의 예치금

나.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

2. 각종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③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이용자의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관리기관이 예치 또는 신탁하고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가상자산사업자(법 제6조제4항제1호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는 법 제6조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관리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이 법 제6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관리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⑧ 관리기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이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법 제6조제4항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을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예치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관리기관의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예치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4.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할 것. 다만, 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⑨ 그 밖에 이용자의 예치금 지급·지급보류, 이용료, 예치 또는 신탁의 주기 등 예치금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가상자산의 보관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1. 이용자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 할 것
2.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것
3.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전부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
4.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보관 방법과 절차, 위탁보관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보험의 가입 등)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가상자산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접근매체”라 한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거래지시 또는 가상자산의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가상자산 매매 등을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4.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가상자산을 위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침해사고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제8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자산거래의 거래자 정보 및 거래대상 가상자산
2. 가상자산거래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이용자가 제출한 호가를 포함한다)
3. 가상자산거래의 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
5.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6. 해당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7. 가상자산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법 제11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 차단 기록 및 정당한 사

유에 관한 자료

9. 법 제12조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 상시 감시 및 조치결과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통보 및 수사기관 신고(신고 사실에 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 보고를 포함한다) 내역

10. 그 밖에 이용자의 가상자산거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제1항의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⑤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9조(정보의 공개)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거나 되는 것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2.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4.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한한다): 공개된 때부터 6시간. 다만, 공개된 시간이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개된 날의 18시부터 공개된 다음 날의 3시 사이인 경우에는 공개된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으로 한다.
5.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유통량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전달매체(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고, 최근 6개월 간 또는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정보가 게재된 경우에 한한다)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1일

6.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나 시간이 경과한 때

제10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예외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착오 입금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한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시할 것

가.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나. 가상자산 취득 사유(제2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사유가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과 이

를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 담당 임원이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다.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라. 처분 계획

2. 관련 명세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가상자산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입금 또는 출금 차단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입금 또는 출금 차단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금 관리기관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금 또는 출금 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2. 가상자산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가상자산을 위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발생한 전산장애 또는 해당 정보통신망 등의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 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원,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상 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 차단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제한한 경우

5. 해킹, 전산장애 등 제7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6. 입금 또는 출금의 상대방이 입금 또는 출금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7.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지원 종료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에 한한다.

8.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다만,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에 한한다.

9. 그 밖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의 차단이 정당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에 따른 입금 및 출금의 차단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제2항의 세부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이 차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법 제1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2.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2. 가상자산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가상자산을 위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을 개발·운영하는 자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등
4.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자
5.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거래한도, 가상자산의 거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종목·품목,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이 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3.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4.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법 제10조제1항의 행위로 한정한다)

다.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라. 위반행위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 법 제10조에 규정된 각 위반행위의 동기·경위·태양·기간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제20조를 준용한다.

④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수납기관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부과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가 된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기소중지 등 수사·

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원회가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8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의 원장을 말한다.)과 금융감독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연간 검사계획 또는 검사 착수계획을 상호 간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제1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1호의2 및 제40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이상거래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감독,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조사, 자료제출 요구, 조치 및 공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5. 제5조제6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
6.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고 및 소명 요구에 관한 사무

## 제5장 벌칙 등

제20조(부당이득산정방식) 법 제19조제6항후단에 따른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과태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가상자산의 거래관계가 이 법 시행 당시 유지되고 있거나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 시행령 [별표 1]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18조 관련)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업무의 집행.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2항제2호 정직요구 및 제3호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5조제6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
6.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소명의 요구

■ 시행령 [별표 2]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제20조 관련)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한다.

1) 총수입은 위반행위가 개시된 시점부터 위반행위 효과가 직접 반영되는 기간의 종료 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 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회피한 손실액,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2) "총비용"은 수수료 등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양도소득세, 미실현이익 관련 제반 비용 등은 제외)을 말한다.

3) 발행량·유통량 변동으로 인한 시세변동분 또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격변동률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이 되는 거래 등은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이 된 대상을 말한다.

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수 개의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전체 행위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합산하여 부당이득액으로 본다.

라. 법인의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법인 등에게 발생한 이득액을 합산하여 부당이득액으로 본다.

마. 수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 공범에게 발생한 이득액 전체를 합산하여 부당이득액으로 본다.

2. 1.에 따라 산정된 부당이득액에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과 제3의 요인에 의한 부분이 결합된 경우 이를 고려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부당이득액 산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한다.

가.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변동과 제3의 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한 방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1) 제3의 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변동을 완전히 상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의 요인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2) 제3의 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변동을 능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의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변동분은 1/3만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3) 제3의 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의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변동분은 1/2만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4) 제3의 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변동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의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변동분은 2/3만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가 제3의 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을 예견하거나 이용한 경우, 그 전체를 부당이득액으로 본다.

다. 제3의 요인이란 제3자의 개입이나 이에 준하는 외부적 요인을 말하며, 막연한 소문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요인은 제외한다.

3. 위반행위 각 유형별 부당이득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10조제1항의 위반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1) 실현이익

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개시 시점부터 정보공개 후 최초로 형성되는 최고 기준가격(이하 “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라 한다)이 형성된 날(이하 “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매도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실현이익은 가중평균 매수단가와 가중평균 매도단가의 차액에 매매 일치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기준가격이란 오전 0시의 가격을 말한다.

다) 매매일치수량이란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작은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미실현이익

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개시 시점부터 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일까지의 기간 중에 처분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미실현이익은 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을 매도단가로 간주하여 매수단가와 매도단가의 차액에 잔여수량(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일에 보유 중인 수량을 의미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3) 회피손실

가) 회피손실은 매도단가와 정보공개 후 최초로 형성되는 최저 기준가격(이하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액에 매도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일 전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과 매매거래 정지일의 기준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거래 정지로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의 거래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0원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시세조종행위)

### 1)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가) 시세조종행위 개시 시점부터 시세조종행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시세조종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실현이익은 가중평균 매수단가와 가중평균 매도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매수단가는 아래를 기준으로 한다.

- a. 시세조종행위 개시일 전부터 시세조종행위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 시세조종행위 개시일 전일의 기준가격
- b.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의 경우와 시세조종행위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매입하는 등 시세조종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 실제 매수단가

나) 시세조종기간 중 처분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미실현이익은 시세조

종행위 종료일의 기준가격을 매도단가로 간주하여, 매수단가와 매도단가의 차액에 잔여수량(시세조종행위 종료일에 보유 중인 수량을 의미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매수단가의 산정은 가)를 준용한다.

다) 시세조종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의 경우, 시세조종행위 개시일 전일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2) 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회피손실)

가) 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 시세조종기간 중 최저 기준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그 외의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식은 1)을 준용할 수 있다.

## 3) 시세의 하락을 유도한 경우

가) 시세의 하락을 유도한 경우, 시세조종행위 개시일 전일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나) 그 외의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식은 1)을 준용할 수 있다.

## 다. 법 제10조제4항의 위반행위(부정거래행위)

1) 부정거래행위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관련 거래”라 한다)가 발행 거래인 경우, 2.의 가.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액으로 본다.

2) 관련 거래가 유통 거래인 경우이거나 1)의 발행 거래에 있어서 시세의 변동 또는 방어를 목적으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가. 또는 나.를 준용할 수 있다.

3) 2)에 따라 나.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거래가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인 경우에는 매수단가를 아래의 기준으로 정한다.

가) 직전에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 해당 사례의 거래단가

나) 직전에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상자산의 발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방식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금액 중 높은 금액

4.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의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1호 | 3,000  |
| 나.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2호 | 3,000  |
| 다.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3호 | 10,000 |
| 라. 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보존 또는 파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4호 | 3,000  |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5호 | 3,000  |
| 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6호 | 6,000  |
| 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7호 | 6,000  |

|   |                      |  |
|---|----------------------|--|
| <p>아. 법인인 자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 <p>법 제22조 제1항제8호</p> | <p>10,000</p>                                |
| <p>자.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 <p>법 제22조 제1항제8호</p> | <p>6,000<br/>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p> |